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가단512142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봉

2.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3,348,493원과 이에 대한 2021. 6. 17.부터 2022. 5. 11.까지는 연 5.8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9. 7. 1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3억 원을 변제기한 2021. 3. 5.로 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가계일반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지급 보증을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3억 3,000만 원, 보험기간 2019. 7. 24.부터 2021. 3. 5.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E에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E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 해당액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다만,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보다 대출약정상 연체이율이 적을 때에는 대출약정상 연체이율)이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9. 2. 16. 피고 C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5.부터 2021. 3. 5.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E에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3억 6,000만 원을 한도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9. 7. 22. 피고 C에게 근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2021. 4. 22.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E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6. 16. E에 피고 B의 대출원리금 303,348,4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E은 2021. 6. 16. 이 사건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2. 5. 2.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2022. 5. 3.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03,348,4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1.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2. 5.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5.8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C가 고의 또는 과실로 E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답변함으로써 E이 대출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만기 미상환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대출금 반환채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원고의 구상금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아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의 E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질권 양수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 C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근질권을 취득하였다.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1항),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근질권의 설정 경위, 일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고 B의 구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3.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2023. 3. 5.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없는바(민법 제352조), 피고 B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2의 가항 기재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임상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F에 있는 G아파트

H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I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J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17층 K호 84.94㎡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F 대 86461.8㎡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86461.8분의 44.817

